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5.

발의자 : 주승용 · 노옹래 · 강창일

장정숙 · 황주홍 · 박주선

최도자 · 이용주 · 손금주

박선숙 · 윤영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(10년단위)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·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).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관리”를 “관리·보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